

의안번호	2217693
의 퇴 인	이춘석의원
회 답 일	2026.6.11.
추계번호	26C1642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 (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)	- 현행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의 대상에 <u>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</u>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) 또는 <u>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</u>를 포함하고,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범위를 상향 입법 - 신생아 뇌성마비, 산모 또는 태아의 사망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6조 (불가항력 의료사 고 보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(안 제46조)

- 개정안에 따라 현행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의 지원 대상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할 경우, 보상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현행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접수된 건에 대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생아 뇌성마비 1억 5,000만원~3억원, 산모 사망 1억원, 태아 사망 2,000만원, 신생아 사망 3,000만원을 보상하고 있음¹⁾

-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(2023.12.14. 개정 법률 시행)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 향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모의 중증장애 진단 건수, ② 이 중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의료사고로 결정될 건수, ③ 개별 보상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거나 과거 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
 - **(중증장애 발생 건수)**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·중재하고 있으며, 2012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 관련 조정사건은 총 7건으로 파악됨
 - 다만,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도입 이전의 현황으로, 개인 간 합의나 소송으로 처리된 사건 등을 고려하면 향후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음
 - **(보상액 단가)** 동법 제46조제5항은 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보상 단가를 가정하기 어려움

[표 1] 분만과정에서 생긴 산모 중증장애 조정신청 현황(2012~2026년 2월 말 기준)

연번	장애 종류	정도 (추정*)	의료사고 개요	조정결과
1	하반신 마비	중증	제왕절개술 후 출혈로 인해 자궁적출술 후 하반신 마비 발생	취하
2	뇌병변 장애	중증	분만 중 산모 심정지 발생 후 자발순환회복 되었으나 뇌병변 장애 발생	조정 불성립
3	하반신 마비	중증	유도분만 중 쇼크 발생하여 전원 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으나 양측 하반신마비 발생	부조정 결정
4	뇌병변 장애	중증	제왕절개 분만 후 회복 중 발작하여 의식불명 및 뇌병변 장애 발생	조정합의
5	뇌병변 장애	중증	분만 후 출혈로 자궁동맥색전술 등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진단	조정합의
6	뇌병변 장애	중증	제왕절개 분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산모 뇌병변 장애 발생	부조정 결정
7	뇌병변 장애	중증	분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손상 발생	진행중

주: 장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장애 정도를 추정
 자료: 보건복지부

1) 「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